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〔서초역~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〕

□ **점검일시 : 2018.01.10 (수)**

□ **점검결과**

◆ **점검자 : 전용현**

<table>
<tr>
<td rowspan="2">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터널 시점부의 관통구간은 천막으로 덮어두었으나, 천공·발파 관련 근로자 등이 인접하여 작업 중 추락할 우려가 있으니 접근 금지 조치 요망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
(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td>
<td> </td>
</tr>
<tr>
<td> </td>
</tr>
<tr>
<td>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방배방향 터널 종점부 철근조립 대차 상부의 가설계단은 발판의 수평도가 불량하고 안전난간의 높이가 낮아 근로자 전도 및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니 작업전 보완 조치 요망.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
(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8
(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td>
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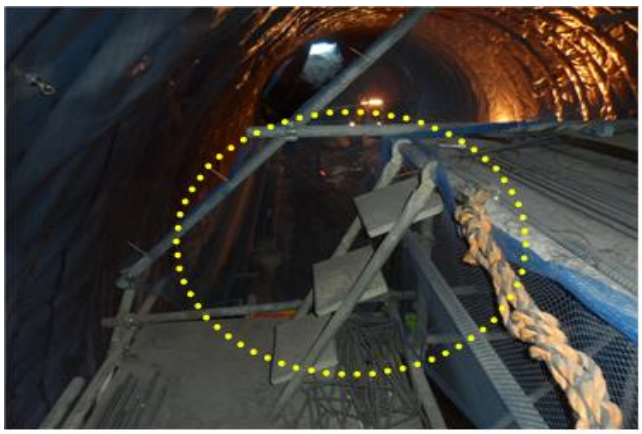 </td>
</tr>
</table>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항공마대는 인양중 낙하재해 예방을 위하여 철재류 적재를 금지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14
(항공마대)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시점부(Sta 0+400 ~ 0+459) 구간은 지하차도 본구조물(벽체 및 상부 슬라브) 작업을 위하여 버팀보 여러단을 한꺼번에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, 지반(연암, 풍화암) 여건 및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흙막이가시설 지보공의 개선방법을 검토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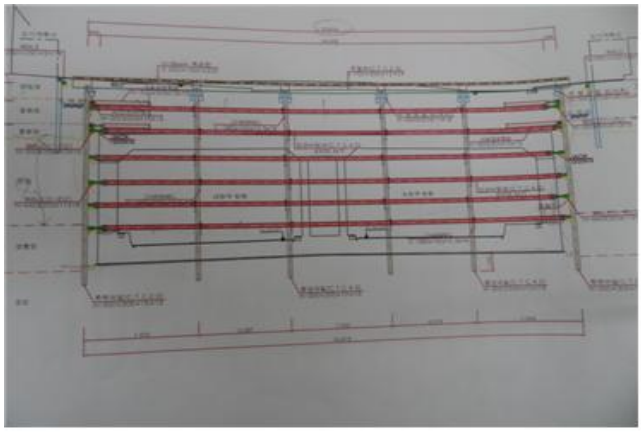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시점부(터널 갱구부) 흙막이가시설은 붕괴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① 우각부 사보강재가 토압에 밀리지 않도록 Stopper 설치 요망(파일과 띠장 용접)
② 띠장의 좌굴방지를 위하여 사보강재와 접합부 시티프너 설치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

○ 시공계획 및 승인(방재시설부) - 당초 터널 중간지점에서의 관통계획이 터널 시점에서의 관통으로 변경되었으나, 상기 내용이 시공계획에 일부가 미반영되어 있으니 보완 요망.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(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	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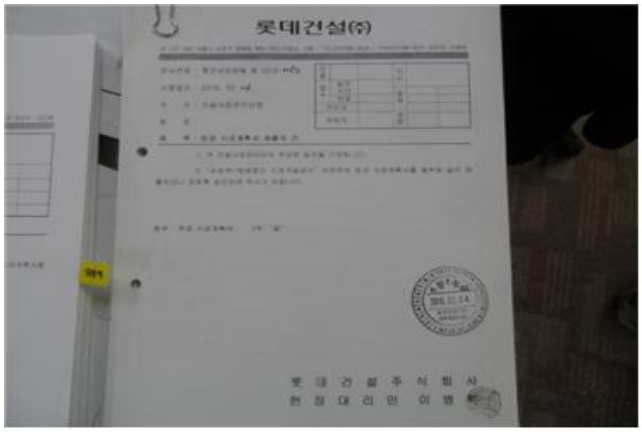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 - 방배방향 터널라이닝 하부에 타설된 기초 콘크리트는 상부라이닝과의 시공이음부에서 수밀성이 부족하여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완 요망.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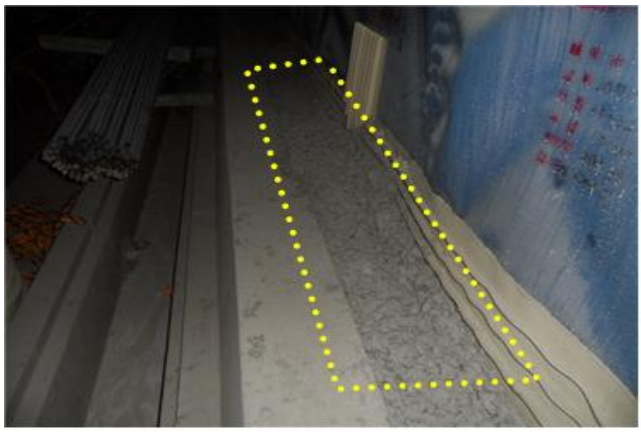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방배방향 터널시점부의 단면이 변횡된 맹암거는 정비 요망.
 - 터널시점부 자재적치장의 파손된 맨홀은 반출 요망.